안전•안심 수산물, 국제 경쟁력 높이는 우리 수산물

한 국 수 산 무 역 협 회

수 신 (경유) 회원사

제 목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우수수산물지원) 대출대상자 모집

1.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우수수산물지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자금배정기준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2. 붙임 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fta.net)에서 "2023년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안내"를 다운받아 2024년 1월 26일(금)까지 기일내에,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23년 기 대출업체는 동 기일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4년 우수수산물지원사업 안내 1부. 끝.

한국수산무역협회장

수신자

전결

과장	상무	전무이사
박애경	박종근	김학조

시행 2024-01-16(화) 접수

우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3호 / http://www.kfta.net

전화 02-6300-8603 팩스번호 02-6300-8900 / kfta@kfta.net

4	우수수산물지원(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강희정 사무관 김기훈 주무관 문균재	044-200-5480 044-200-5483 044-200-54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과 장 이진희	061-931-114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과 장 김난영	02-2240-8525

1. 사업목적

○ 우수 수산물 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WTO/DDA 및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에 기여

2. 근거 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49조(기금의 용도)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경영 개선

○ 대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우수 수산물 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

4. 2024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업체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액(천불)		4,941	4,175	3,904	4,556	-	익년 2월	지원업체의 수산물 수출실적 금액 합계/지원업체수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32,401	132,401	132,401	132,401

* '24년도는 정부안 기준, '25~'27년도는 '23~'27년 중기재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6. 2024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후 유통하는 업체

* 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 제외 가능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만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하는 업체는 제외(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괄 지원(수협은행에서는 관련 업계의 대출 신청 또는 문의 등이 있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안내)

○ 지원규모(대출취급기관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지원액	비 고
계	132,401	
■ 수협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752 85,649	기관별 지원액 조정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지원액 85,649 백만원 중 6,618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해당 업계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 일반 지원대상 업체로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경우, 하반기 잔여 예산 발생 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산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또는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직전 회계연도 최대 해외 매출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대출기간 : 1년 상환(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 ① 혹은 ②로 선택 가능

① 고정금리: 어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0%

- 사업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량업체는 0.6%P, 유망업체는 0.3%P의 금리를 인하 적용한다.(이 경우 우량업체는 평가업체 상위 35% 이내, 유망업체는 35% 초과 7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적용 선정 업체 중 유사 성격의 정책자금 사용(중복지원)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삭감 적용(우량업체는 유망업체 금리로 유망업체는 일반업체 금리 적용)

② 변동금리: 매월 변동금리 고시

- (금리변동주기)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 변경

- (기준 금리) 대출시점 기준 수협은행 고시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 사업자 의무부담

① 연근해산, 원양산 등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출액의 30% 이상 원료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매출 이행

② ①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업체는 대출액의 70%이상 해외매출 이행

○ 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 계획의 수립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 신청자격, 사업자 선정기준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후 대출취급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1.21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가 지원의 경우 자금지원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협회나 대출기관의 지역본부·지점(수협의 경우 회원조합 포함)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사업 신청자격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자 선정 및 배정기준은 대출취급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다.

  · 사업자 선정.취소는 대출취급기관간 협의하여 동일하게 적용

- 대출취급기관이 원활한 사업자 선정 및 대출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조합,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추천기관은 피추천 업체에 대해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사업추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비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추천기관의 사업대상자 추천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사업비 지원이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함
  · 추천대상자가 지원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 대출희망금액이 담보제공 능력 또는 상환능력 등에 적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업체 중 해외매출 실적, 원료 구매실적, 업체 업력 등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수산물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 내부 선정기준 설정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HACCP 등록업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적합 업체,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업체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가점을, 전년도 사업자 선정이후 포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 지원계획 공고(대출취급기관) : 1월 중

- 사업신청 접수(대출취급기관) : 1월 중

· 사업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중 택일하여 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평가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추천 및 선정·배정(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 2월말까지

· 사업 선정자는 사업평가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선정 1개월 이내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동의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제공하여야 함

- 대출실행 : 사업자 희망시기(연중)

* 대출 취급기관 간 사업신청 결과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신청여부 확인

** 대출포기 등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자 추천 및 선정·배정 가능하며, 배정결과는 배정이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해수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향후 집행전망(차월, 연말기준) 등 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 사후관리사항 : 자금의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실적 및 의무 미이행 업체 점검

- 사업정산 : 대출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시. 단,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산 미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 사용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것에 다음으로 긴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을 말한다) 동안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대출취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대출금 또는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조, 태풍, 화재, 이상 수온 등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해양 오염사고, 어황 부진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해외 매출 실적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율, 유가 및 위생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출 취급기관은 제재조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되는 명백한 자료(서류)를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평가 등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및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야야 한다.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책금융부(☎ 061-931-1142)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 및 규정에 따름